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새해 3월부터는 부실벌점산정제도가 개선되어 건설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 현행 3년간 누계평균에서 2년간의 누계평균으로 바뀌어 산정되고, 4월부터는 연면적이 495m^2 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시공과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4월 시행 예정)

○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규정」이 오는 4월 15일에 폐지되어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규모나 용도에 제한 없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건축주가 시공하지 않고 무등록자에게 도급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재개정 됨에 따라 금년 4월부터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m^2 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m^2 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m^2 이하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

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용 및 축산업용과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예외가 인정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3월 1일 시행 예정)

○ 국민주택기금업무 위탁관리 자 변경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금융지원을 위한 특수은행이었기 때문에 주택금융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한국주택은행에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1997년 한국주택은행이 민영화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주택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건축사업 요건 완화

노후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내 소규모 상가가 여러 동 있는 경우에는

각 동마다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많은 아파트 입주민이 재건축에 동의하여도 소수의 상가 소유주가 반대하면 재건축이 불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여러 개의 상가, 유치원 등 복지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아 복지시설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촉진할 수 있게 하였다.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이 폐지(1999년 4월 15일)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도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게 되어

부실시공,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동 법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은 건설업자나 등록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 주택조합 가입자격 확대

외환위기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매년 60만호 이상에 달하던 주택건설 실적이 1998년에는 30만호에 불과하는 등 주택건설 실적이 크게 부진한 설정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있어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8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소유자가 25.7평 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코자 한 것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1월 시행 예정)

○ 택지환매제도 폐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된 택지를 3년 이내에 당초 공급된 용도로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묘이장 명령제도 폐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행하는 분묘 등의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게 되었다.

■ 건축법

(1월 시행 예정)

○ 이행강제금제도 완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적용을 완화하였다. 즉, 연면적 85㎡이하인 무허가·위법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기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제이행금 부과금 액을 현행의 50% 이내, 총부과회수를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 것이다.

■ 도시개발법

(7월 1일 시행 예정)

종전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 개발관련규정에 도시구획정리 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였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 인·허가절차 간소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 3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법인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 등의 경우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

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 부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권의 남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토지수용 또는 사용시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어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노력없이 개발이익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

업인정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지가가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토지채권 발행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대금을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주택법

(7월 시행 예정)

○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허용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및 토지수용을 위한 공익사업자 지정을 위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예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퍼센트로 제한하기로 하고, 다만 그 시행시기를 2001년 4월 1일로 하였다.

19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계열사간 출자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초래하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 발생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현행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최고 한도가 낮아 부당지원 내용 및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기업구조정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함)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이 합하여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 외국인투자의 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대규모 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내부거래공시 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고 공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부당지원행위가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건축사법

(4월 시행 예정)

○ 건축사 면허제도를 건축사자격으로 변경

종전에는 건축사가 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면허제를 폐지하고 건축사 자격시험에만 합격하면 되고 면허증·면허수첩은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대체된다.

○ 건축사사무소 등록제의 신고 제 전환 등

건축사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였다. 또한 건축사는 그가 제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폐지하였다.

○ 건축사협회 설립 및 회원가입의 임의화

협회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 업무 제한적 허용

건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나 감리전문회사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에 소속된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내의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동일한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가 설계를 직접 하고서도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대여를 통해 허가를 받는 탈법행위가 성행할 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진입규제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에도 당해 건설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종합화 추세, 턴키M발주의 확대 등의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자기 공사뿐만 아니라 턴키나 CM발주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당해 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제 도	총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정 및 시행일
개발부담금 재부과 및 부과율 인하	'99.12.31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50%)면제	2000.1.1 이후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재부과 및 부담금 인하(개발이익의 25% 부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0.1.1)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만m ² 이상인 경우 허용	앞으로는 10만m ² 이상인 경우에 허용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0.1월중 시행 예정)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지역이 대지인 경우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시·군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허용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0.1월중 시행 예정)
개별공시지가결정체계의 탄력적 운영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회만 산정	개별공시지가 산정후 분할·합병 등으로 변동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함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0.4월 시행 예정)
개별공시지가 정정 근거 마련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 미비	명백한 하자(위기·오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0.4월 시행 예정)
감정평가법인·형태의 다양화	감정평가법인의 형태를 합명회사로 한정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의 모든 회사형태를 허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0.4월 시행 예정)
감정평가시 고려요인 확대	모든 토지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담보, 경매등의 평가시에는 공시지가 외에 토지의 임대료 등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0.4월 시행 예정)
중개인의 업무지역 차별을 폐지	중개인의 업무지역을 시·군·구로 한정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	부동산 중개업법(2000.7월 시행 예정)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 간소화	등록관청 관할구역내 이전시 사전신고, 관할구역외로 이전시 폐업하고 다시 등록	이전 후 10일 이내에 신고통 간소화	부동산 중개업법(2000.7월 시행 예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확대로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현행 권리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여건을 추가	부동산 중개업법(2000.7월 시행 예정)
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을 확대	직장,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	직장,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을 18평 이하 유주택자로 확대	주택건설촉진법(2000.3월 시행 예정)
재건축사업요건 완화	재건축사업에서 상가동 및 유치원 등 복리시설을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여 한쪽만 반대해도 재건축이 곤란함	상가동 및 유치원 등 복리시설은 2동이상 동을 1개동으로 보도록 하여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함	주택건설촉진법(2000.3월 시행 예정)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제 도	총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정 및 시행일
주택공급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제도완화	주택공급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주택공급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건설촉진법(2000. 3월 시행예정)
임대주택임차인에게 대표회의 구성 허용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 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는 임대주택분쟁 위원회 설치	임대주택법(2000.6월 시행예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묘 이장명령제 폐지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분묘 등의 이전을 명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대 집행 가능	폐지	택지개발촉진사업(2000. 1월 시행예정)
택지의 환매제도 폐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된 택지를 3년이내 공급된 용도로 주택두등을 건축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음	폐지	택지개발촉진사업(2000. 1월 시행예정)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의무	건축사가 근무처 변경등 신상 변동시에는 30일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폐지	건축사법(2000.4월 시행 예정)
건축물시공자의 제한	건축주가 자기건물을 직접 건 축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 없이 직접시공 가능	연면적이 495 m ² (주거용은 661 m ²) 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 다만, 농업용·축 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은 예외	건설산업기본법(2000. 4월 시행예정)
건설기계 임시운행 허가제 폐지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	별도의 허가없이 임시번호표를 부착하고 운행	건설기계관리법(2000. 7월 시행예정)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부착·봉인자 지정제도 폐지	건설기계등록번호표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받은 자가 봉인·부착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부착 가능 토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2000.7월 시행예정)
철강구조물공장 인증 등급 확대	대형공장 위주로 공장인증을 1, 2등급만 부여	중·소규모 공장을 포함하여 공장 인증을 1~4등급으로 확대	건설기술관리법(2000.9. 1 시행예정)
부실벌점정산제도 개선	건설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을 3년간의 누계평균으로 산정	부실벌점을 2년간의 누계평균으로 산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 칙(2000.3.1)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제 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정 및 시행일
자동차 공제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사업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공제조합간 보상금분쟁발생사 건교부장관 소속하에 이를 조정토록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피해자 보상수준 및 서비스 제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0.7.1 시행예정)
댐건설시 수몰민들에 대한 조기보상 실시	댐건설 실시계획수립시를 기준(사업인정시점)으로 보상 실시	댐건설 기본계획수립시를 기준(사업인정시점)으로 보상을 실시, 종전보다 보상이 1년정도 앞당겨져 수몰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0.3.8 시행예정)
댐주변지역의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완공후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 하류: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댐중심선으로부터 5km - 댐당 연간 평균 2억원정도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완공후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 만수위선으로부터 5km - 하류: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댐중심선으로부터 5km ○ 댐건설기간중 댐주변지역정비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당 평균 200~300억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0.3.8 시행예정)
댐건설 예정 지역 내 행위허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다년 생수목의 재식·이식 허가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지방국토 관리청장에게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축사육 추가 허가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0.3.8 시행예정)
댐건설에 따른 이주정책지원금 등을 상향조정	이주정책지원금: 가구당 8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가구구성원 1인당 100만원(최대 4인)	이주정책지원금: 가구당 1,2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가구구성원 1인당 200만원(최대 4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0.3.8 시행예정)

건설업임금 3개월째 상승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까지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54만6천원으로 전년동기 144만2천원보다 10.6% 상승,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째 두자릿수 상승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이 15.4%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금융·보험·부동산업(13.8%), 제조업(13.6%) 등의 임금상승

이 두드러졌으며 건설업도 1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중 근로시간은 월평균 207.3시간으로 전년동기 월평균 198.4시간에 비해 4.5% 증가했으며 건설업도 194.9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1.6% 늘어났다.